

『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(안) 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오인영 행정위원장 외 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
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정이유

- 현재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설치·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
통합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안전성, 수익성, 유동성을 높이고,
- 각 기금의 연간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
주민의 복리증진, 지역경제의 활성화,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을
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통합관리기금의 자원(안제5조)
- 통합관리기금의 용도(안제6조)
-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(안제8조)
-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(안제9조)
- 위원회의 운영 등(안제11조)
-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(안제12조)

□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- 재산 및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-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6조 - 기금의 운용관리

□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에서는 6년 전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장하였으며,
-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
- 현재,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총43개 지방자치단체(광역시15, 기초28:서울시 자치구5)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구로구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참작하여 제정되었고,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2. 21

보고자 : 김 찬 재

붙임 : 관련법조문

관 련 법 조 문

지 방 자 치 법

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
-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1994.3.16>
-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4.3.16>
- ③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제정 2005.8.4 법률 7664호]

- 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[일부개정 2005.6.30 대통령령 18903호]

- 제15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 <개정 1993.9.23, 1999.4.30>
-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9.23>
- ③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, 그 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8.7.16>